

스포츠클럽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4일
신고인 (대표자)	①성명		
	②법인·단체명	③전화번호	
	④소재지	⑤설립 연월일	
	⑥사용 시설		
	⑦운영 종목		
	⑧회원 현황: 총 회원 명		
	여성 회원 명		
신고 법인·단체	청소년 회원 명		
	장애인 회원 명		
	중증(명). 경증(명)		
	지체(명). 뇌병변(명). 시각(명)		
	청각(명). 지적·자폐(명). 기타(명)		
변경사항	변경 전		
	변경 후		

「스포츠클럽법」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 사항의 변경을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군·구체육회

시·군·구장애인체육회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1. 등록 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2. 스포츠클럽 등록증	수수료 특별자치시· 특별자치도· 시·군·구 조례로 정하는 금액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

유의 사항

“청소년”이란 19세 미만인 사람(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)을 의미합니다.

처리절차

신고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	→	신고처리	→	등록증 발급
신고인		처리기관 (시·군·구체육회, 시·군·구장애인 체육회)		처리기관 (시·군·구체육회, 시·군·구장애인 체육회)		처리기관 (특별자치시·특별 자치도·시·군·구)		처리기관 (특별자치시·특별 자치도·시·군·구)